

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의회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2025. 6. 25.(수)



의회운영위원회
전문위원 나태연

목 차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	1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3
3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
4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	7
5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	9
6.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	11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0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이연숙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,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, 의회 운영에 관해 산재한 조례·규칙을 묶어 의회 운영의 근간으로서 역할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본이념·원칙·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장)
- 의원 등록·의석배정·사직·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장)
- 의장·부의장 선거, 임기,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장)
- 위원회 설치·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장·제5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에 규정된 내용 중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, 이와 함께 의회 운영에 관해 산재한 조례·규칙을 통합하여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 제1장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 기본이념과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본 조례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2장과 제3장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에서 분리한 내용으로, 안 제2장에서는 의원 등록·의석 배정·의원 사직·의원의 자격심사 등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3장에서는 의장·부의장 선거와 임기,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- 안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달성군의회 의 위원회 설치 근거와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특히 의원 연구단체 및 법률고문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기구가 의정활동 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달성군의회 의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의회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,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4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박주용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의회사무국장의 소관 사무 중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 통합하며,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, 체계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회사무국장의 사무 분장 내용 간소화(안 제3조제2항)
- 의회사무국의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 겸임 규정 개정 (선임전문위원→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) (안 제4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소관 사무에 대한 조문상 용어를 정비·통합하고,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을 겸임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사무 분장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.

- 또한 기존 규정에 명시된 ‘선임전문위원’에서 ‘선임’의 정의가 불분명함에 따라 업무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3항에서는 ‘선임전문위원’을 ‘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’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
- 이번 개정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, 본 규칙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1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신달호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직개편 사항 반영(안 제8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조직이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안 제8조제2항에 국 명칭이 자치행정국에서 행정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- 집행기관의 개편된 조직을 반영하여 의회의 견제 기능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2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김보경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행정안전부 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’ 등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·사후관리 강화, 비용지출 제한,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·제8조·제9조)
-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·게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참고자료: 「지방의회 공무출장 규칙 표준(안)」(행정안전부)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’ 등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, 달성군의회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안 제4조·제8조·제9조에서는 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출장의 사전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,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기준 45일 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.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, 공개된 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수렴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아울러 안 제13조에서는 출장자가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, 출장 예산의 투명한 편성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이처럼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계획하고 수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이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본 규칙의 전부개정은 행정적·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

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3호
- 발 의 일: 2025년 6월 5일
- 발 의 자: 최재규 의원 등 5인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의회 개최식 및 개폐선포에 관한 사항(안 제1장)
- 회의의 개폐·의안 회부·심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장)
- 위원회 운영 및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장)
- 예산안등 및 결산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장)
-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·답변에 관한 사항(안 제5장)
- 질서와 징계에 관한 사항(안 제6장·제7장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은 당초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총 10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, 규칙이 다소 방대하고 무겁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에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를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,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외에 의원 등록·의석 배정·사직·자격심사 등 의원에 관한 사항과 의장·부의장 선거 및 임기 등 의장·부의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.
- 그 외에 안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, 조문이 제외됨에 따라 조문번호 등 형식적인 부분만 정비하였습니다.
-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규칙 제명에 부합하도록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75호
- 제출일: 2025년 5월 27일
- 제출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3. 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

1) 일반회계 세입 결산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실제수납액	정리보류액	미수납액
군 전체	1,202,725,318	1,246,768,624	1,218,533,227	2,179,127	26,056,270
의회사무국	-	165	165	-	-
세외수입	-	165	165	-	-
경상적세외수입	-	15	15	-	-
임시적세외수입	-	150	150	-	-

2) 일반회계 세출 결산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 (가)	예산성립후 증감 (나)	예산현액 (다*)	지출액 (라)	이월액 (마)	보조금 반납액 (바)	집행잔액 (사**)
군 전체	1,064,232,520	138,492,798	1,202,725,318	1,009,434,418	142,685,674	8,451,022	42,154,203
의회사무국	3,312,223	163,940	3,481,163	2,826,374	48,000	-	606,789
의정활동 지원	922,790	5,940	928,730	811,771	48,000	-	68,959
의정활동 홍보	259,489	20,000	279,489	175,604	-	-	103,885
의회청사 환경정비 등 관리	494,950	143,000	637,950	589,539	-	-	48,411
합리적 인사행정	7,400	-	7,400	4,036	-	-	3,364
행정운영 경비	1,627,594	-	1,627,594	1,245,424	-	-	382,170

* 예산현액 : (다)=(가)+(나) / ** 집행잔액 : (사)=(다)-(라)-(마)-(바)

3) 이월 사업비 결산

(단위: 천원)

구분	건수	다음연도 이월액	주요 이월 사유	
군 전체 일반회계	계	474	142,685,674	
	명 시 이 월	306	91,298,216	
	사 고 이 월	158	36,029,072	
	계속비이월	10	15,358,385	
의회사무국	명 시 이 월	1	48,000	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수행 - 달성군 청년지원 현황 분석 2025.2.28 종료 -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 2025.1.31 종료

4. 검토의견

-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법적·의무적·경상적 성격의 필수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,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없습니다.

-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총 165천 원으로,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천 원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150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세입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액 수납되어 세입관리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.

-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경우, 예산현액은 총 3,481,163천 원이며, 이 중 2,826,374천 원이 집행되었고, 48,000천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, 집행잔액은 606,789천 원입니다.

- 세부 항목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,
 - 의정활동 지원 분야는 총 928,730천 원의 예산 중 811,771천 원이 집행되었고, 48,000천 원이 명시이월되어, 집행잔액은 68,959천 원입니다.
 -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총 279,489천 원 중 175,604천 원이 집행되었으며, 집행잔액은 103,885천 원입니다.

- 의회청사 환경정비 등 관리 분야는
총 637,950천 원 중 589,539천 원이 집행되었고,
집행잔액은 48,411천 원입니다.
- 합리적 인사행정 운영 예산은
총 7,400천 원 중 4,036천 원이 집행되었으며,
집행잔액은 3,364천 원입니다.
-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,
총 1,627,594천 원 중 1,245,424천 원이 집행되어
집행잔액은 382,170천 원입니다.

○ 이월 사업비 결산 내역에 따르면,
의회사무국 소관 이월 사업은 총 48,000천 원으로
전액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.
해당 이월은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의
용역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,
「달성군 청년자원 현황 분석」 과
「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」
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합니다.
두 용역 모두 목적과 기한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었으며,
기한 내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이월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전체 세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1.2%로, 대체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월 및 집행 잔액의 발생은 각 사업의 특성과 추진 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, 일부 홍보 사업 및 인사 행정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

- 향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집행 계획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,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인 운영 효과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